

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일자 : 2018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제 호 | 의결사항 |
| 의결 연월일 | 2018. . . (제 회) | |

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| 고령군수 (총무과장) |
| 제출연월일 | 2018. . . |

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

1. 개정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이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인용 법령명 및 기금명칭 변경 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「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「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 인용법률 및 용어를 정비함.

○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변경 (안 제5조)

기금의 투명한 운영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설치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갈음함.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자료

가. 관련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(2016. 7. 7 법률 13726호)

나. 예산관련사항 :

다. 합의 :

라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

마.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:

바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

사. 기타 관련사항 :

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”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”으로, “관하여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군”을 “고령군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20조의2”를 “법 제10조의3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2. 광고물의 정비·개선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옥외광고업자”를 “옥외광고사업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제1항제7호(중전의 제6호) 중 “군수”를 “고령군수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군수가 운영·관리한다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·세출외로 관리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하여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”로, “둔다”를 “두되, 「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”를 “옥외광고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출납원을”을 “기금출납원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6월말일”을 “개시 80일 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된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|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|
|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 다)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 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 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 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 (목적) ----- 「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」----- -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----- ----- - 필요----- -----. |
| 제2조 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 고사업 수익금 중 균에 배분되는 수익금 2. 3. (생 략) 4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 금 5. 6. (생 략) 7.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 성한 수익금 | 제2조 (기금의 재원) 옥외광고발전 기금----- 1. ----- ----- 고령군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4. 법 제10조의3----- 5. 6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|
| 제3조 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| 제3조 (기금의 용도) ① ----- |

| | |
|--|--|
|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 1. 광고물 등의 정비 2. 경관개선 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<신 설> 4. 5. (생 략) 6.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(생 략) 제4조 (기금의 운영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군수가 운 영·관리한다. ②·③ (생 략) 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| ----- ----- 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. 광고물의 정비·개선 3. 옥외광고사업자 등----- ----- 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. 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 음) 7. ----- 고령군수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4조 (기금의 운영관리) ① ----- ----- 「지방재 정법」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세입·세출외로 관리한다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- ----- ---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 용심의위원회----- ----- 두되, 「고령군 옥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 |
|--|--|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삭 제>

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.

<삭 제>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<삭 제>

1. 기획감사실장, 옥외광고담당과장(당연임명직)

2.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(위촉직)

3.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(위촉직)

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7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
<삭 제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

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 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<삭 제>

②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회계공무원)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제10조 (회계공무원) ① -----

-----.

1. (생략)
2. 기금출납원 :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옥외광고담당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----- 기금출납원은 -----

-----.

제11조 (기금결산) ①·② (생략)

제11조 (기금결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

③ -----

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
일까지 고령군의회에 제출하여 심
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----- 개시 80
일 전-----
-----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

제2조(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
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
의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용된 고
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
에 따른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
으로 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총무과 | |
| 연 락 처 | 054-950-6332 |